

의안번호	제 226 호
의결연월일	2015. . . (제 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8월 24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한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
----------	-----

발의연월일 : 2015년 8월 24일

발의자 : 박한범, 박봉순, 박종규
임병운, 장선배, 최병윤
윤은희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및 관계 법령의 제명변경
- 민원인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조문용어 및 자구 정리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및 시험·검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안 제3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시행 2015.1.16.] [총리령 제1135호, 2015.1.16.,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나. 수수료의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납부 규정 명시(안 제3조제5항)
- 다. 시험성적서 발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명시(안 제4조제3항)
- 라. 검사·시험 등 불응 시 의뢰인에게 사유 통지 규정 명시(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다.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5-22호
- 라. 협의: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 마. 비용추계: 해당없음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검사·시험의뢰)”를 “(검사·시험 등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시험·조사·연구(이하 “검사·시험 등”이라 한다.)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뢰서와 별표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 등을”을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뢰자”를 “의뢰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로, “사본 청구시에도”를 “재발급 청구 시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 시험 등” 을 “검사 · 시험 등”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시험성적서 교부)” 를 “(검사 · 시험성적서 교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장이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 ·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 ·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체의 정정을 ” 을 “그 내용을 정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인으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

제5조제11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검사가” 를 “검사 · 시험 등 이” 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검사 · 시험 등 불용)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 · 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검사 · 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 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발급”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제8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와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동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 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신설>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때-----

-- 재발급 청구 시에도-----.**

**③ 검사·시험 등 -----
-----해
당-----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과 제3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에 따른다.

제4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연구원에서 검사, 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 한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발급)

① 원장이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인으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

제5조(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수료 감면)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
----검사·시험 등이-----

<p><u>제6조(검사, 시험 등 불용) 검사, 시험 등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제6조(검사·시험 등 불용)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 할 수 있다.</u></p> <p><u>② (생략)</u></p>	<p><u>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 규정을 ----- 제4조에 따라 발급한 -----.</u></p> <p><u>② (현행과 같음)</u></p>

관계법령 발췌

□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 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 식품첨가물 · 기구 · 용기 ·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 수처리제(水處理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에 대한 검사 · 시험 ·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 토양 · 농약잔류량,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 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 개인하수처리시설 · 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 · 시험 ·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 · 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 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수수료 등) ①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검사, 그 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애플리하여 의뢰한 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검사

□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삭제 <2013.3.23.>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각종 질환의 원인균 등에 관한 시험
 3. 삭제 <2013.3.23.>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수수료) ①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시험을 할 때 특수한 동물·식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에 그에 드는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출장에 드는 비용의 산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③ 원장은 시험대상물을 잘못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방지 또는 환경감시를 위해 필요하여 의뢰한 시험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원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